

2026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 지원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 ➡ 지원대상 :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
-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기업당 640만원 이내,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신규/갱신/사후관리, 해외 ISO 일부 포함) 획득에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확인은 【붙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목록】 참고

- ➡ 지원한도 : 기업당 640만원 이내, 총 소요비용의 70%

※ 기업부담 : 소요 비용의 30%(지원한도 초과금액 포함) + 부가가치세

4. 지원 요건

- ➡ 지원 대상 자격기준(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기업

다. 당해연도('26년)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신규/갱신/사후관리, 해외 ISO 일부 포함)을 완료한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나. 공고 마감일 기준,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다. 동일 인증으로 타 기관에서 또는 타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라.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기업

마.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중소기업

사.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 신청기간 : 공고일 ~ '26. 8. 28.(금) 18:00

➡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기본 서류	- 신청서, 완료보고서[서식 제1~2호]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별첨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5년 귀속분) - 수출실적확인서('25년)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6년 1월)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지원금 수령용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출 증빙 서류	해외규격 인증서	- 인증서 사본,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 비용	<필수> -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 - 인증서 발행비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 확인증)
			<대리인 선임 시> - 법정대리인 선임 서류(신분증, 선임계 등) - 선임비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시험 비용	- 시험비용 견적서, 시험 의뢰서 또는 항목내역서, 시험 성적서 - 시험비용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컨설팅 비용	- 컨설팅 계약서 또는 자문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 컨설팅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선택 (해당시)	평가 서류	- 공장등록증명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가점 서류	①여성기업 확인서, ②장애인기업 확인서 ③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 ④벤처기업 확인서 ⑤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5. 선정평가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 선정

➡ 평가방법 :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서류심사(정량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100점) + 가점(최대 15점)**

기업 기본 역량 [45점]	평택시 소재(10점), 업력(10점), 전년도 매출(15점), 고용(10점)
제품 및 기술 우수성 [20점]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20점)
수출 준비도 및 잠재력 [35점]	전년도 수출 실적(15점),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10점),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보유(10점)
가점(최대 15점)	기업인증(각 1점), 최근 5년 이내 평택시 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기업(5점), 해외규격인증 신규 획득 신청 건(5점)

➡ **결과 발표 : '26년 9월 예정**

6. 유의사항

➡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GBSA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 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거점센터 평택출장소**

- (TEL) 031-651-7163, (E-mail) andjt200@gsa.or.kr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1층